|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세무행정 심사항목 폐지 후 유관**  **관리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56호  후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세무행정 심사항목 폐지 후 유관 관리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등록소재지 외 타 지역에서 경영하고자 신청)한 세무등기에 대한 심사”를 폐지한 후의 유관 관리문제에 관하여  납세자는 구비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으로 정한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처리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법으로 정한 규정에 부합되는 않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세무사항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필요한 보충내용을 일괄적으로 고지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확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 및 사회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등기처리의 효율을 높인다. 납세자는 등기서류 내용을 중복하여 작성하지 않고 중복하여 등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부서간의 정보 및 데이터 공유 업무를 강화한다.  2. “낙후지역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납세기간(3개월/6개월/1년)을 정해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한 세금납부 제도”를 폐지한 후의 유관 관리문제  낙후지역에서 실행하는 세금납부 간소화 신고를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일상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원 추적관리를 실행하여 즉시 납세자의 경영변동상황을 파악한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세금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기계 통합시스템” 방식을 채택하여 징수기간의 신고율과 입고율을 향상시켜 징수관리상의 누락을 방지한다. 세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납세서비스를 구축하여 납세자의 세무처리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향상시킨다.  3. “수출 환급(면제) 자격인정”, “수출 환급(면제) 자격인정의 변경”, “수출 환급(면제) 자격인정의 말소”, “연구개발기관에서 구매한 국산설비 환급자격의 인정”, “그룹 회사가 보유한 세금환급자격의 자회사 인정”, “국경 소액무역 방식의 외국기업, 외국국적을 가진 개인의 수출품 신청등기 및 신청삭제의 심사대리”를 폐지한 후의 유관관리문제에 관하여  (1)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는 최초 수출 환급(면제) 신고 시, 주관국가세무기관에 아래의 자료를 제공하고, 수출 환급(면제) 비안절차를 처리한 후, 환급(면제)을 신고한다.  ①《수출 환급(면제) 비안표》(첨부1)에 진실하고 빠짐없이 내용을 기입하고 그 중 “퇴세 계좌 개설 은행의 계좌번호”는 세무등기의 은행 계좌번호 중 하나를 선 택하여 기입한 후 신고한다.  ② 비안등기 전용인감이 날인된《대외무역경영자비안등기표》또는《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③《중화인민공화국 세관신고단위 등록등기증서》  ④ 비안등기가 처리되지 않은 위탁수출업무를 하는 생산기업이 위탁대리수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제2목, 제3목 자료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⑤주관국가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자료  (2)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제공하는 수출 환급(면제)의 비안자료를 구비하고, 《수출 환급(면제) 비안표> 에 기입한 내용이 요구에 부합되고, 서명 및 날인이 완벽한 경우에는 주관국가세무기관이 현장에서 비안을 해주어야 한다. 상술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국가세무기관이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보충 수정할 때까지 대기한 후 비안을 해줘야 한다.  (3)《수출 환급(면제) 비안표》중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국가세무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변경된 비안내용을 처리한다.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환급(면제) 방법”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국가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환급(면제)세금을 정산한 후 변경처리를 해야 한다.  (4)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수출 환급(면제) 비안을 폐지할 경우에는 주관국가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환급(면제) 세금을 정산한 후 처리해준다.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세무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주관국가세무기관에 환급(면제) 비안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5) 수출 환급(면제) 자격인정을 이미 처리한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는 수출 환급(면제) 비안을 다시 처리할 필요가 없다.  (6) 그룹회사가 자가생산으로 간주되는 구매 물품에 따라 면제(공제) 환급을 신고할 경우에는 그룹회사 본사는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주관국가세무기관에 비안한다.  ①《그룹회사의 자회사 비안표》(첨부 2) 및 전자신고 데이터  ② 그룹회사 본사 및 그 지주회사인 생산기업의 영업집조 부본 사본  ③ 그룹회사 본사 및 그 지주회사인 생산기업의《수출 환급(면제) 비안표》(또는《수출 환급(면제) 자격인정표》) 사본  ④ 그룹회사 본사 및 그 지주회사인 생산기업의 정관 사본  ⑤ 주관국가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자료  그룹회사 본사가 상술한 비안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그룹회사의 자회사 비안표》를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기입한 경우에는 주관국가세무기관이 현장에서 비안을 해 주어야 한다. 상술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국가세무기관이 일괄적으로 기업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보충 수정할 때까지 대기한 후 비안을 해줘야 한다.  (7) 자가생산 물품으로 간주되는 물품 구매에 따라 면세, 공제, 환급을 신고한 그룹회사가 비안 후, 주관국가세무기관이 그룹회사 본사와 자회사 소재지 상황에 따라《그룹회사의 자회사 비안표》를 전달한다.  ① 동일한 지역의 시일 경우, 그룹회사 본사 소재지 주관국가세무기관은 《그룹회사의 자회사 비안표》를 지역 시급 국가세무국까지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그룹회사 본사, 자회사 소재지의 국가세무국에 전달한다.  ② 동일한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이하 상동)이나 동일한 지역의 시가 아닐 경우에는 그룹회사 본사 소재지 주관국가세무기관은 《그룹회사의 자회사 비안표》를 보고 라인에 따라 성급 국가세무국까지 보고해야 하고, 성급 국가세무국은 그룹회사 본사, 자회사 소재지 국가세무국 별로 전달해야 한다.  ③ 동일한 성이 아닐 경우, 그룹회사 본사 소재지 주관국가세무기관은 《그룹회사의 자회사 비안표》를 보고라인에 따라 국가세무총국까지 보고해야 하며, 국가세무총국이 그룹회사 본사, 자회사 소재지 국가세무국 별로 전달해야 한다.  (8) 국경 소액 무역방식으로 외국기업 및 외국자연인을 대리하여 물품을 수출하는경우, 수출기업은 화물수출세관신고일(수출화물세관표 상의 수출일을 기준으로 함)의 다음 월부터 다음 해 4월 30일 전까지의 각 증치세 납세신고 기간 내, 아래의 자료를 주관국가세무기관에 제출하여 세관신고대리비안을 처리한다.  ① 기업 관련 구성원의 서명, 회사인감 날인 및 내용이 전부 기입된 《국경 소액무역 방식의 외국기업, 외국국적을 가진 개인의 세관대리 수출화물비안표》(첨부 3) 및 전자데이터  ② 수출대리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수출대리 계약서가 외국어로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시에 중문번역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위탁업무 담당자의 여권 또는 외국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수출기업이 국경소액무역방식으로 외국기업 및 외국자연인을 대리하여 수출한 물품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비안한 경우에는 증치세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단지 대리 수속비 수입에 대하여만 증치세 신고를 한다.  주관국가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국경 소액무역 방식의 외국기업, 외국자연인의 수출품을 대리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비안 상황을 검사해야 하고, 수출기업이 본 규정에 따라 대리 세관 비안을 처리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고정장치로 설치된 비운송차량의 차량취득세 면제징수에 대한 심사”를 폐지한 후의 유관 관리문제에 관하여  납세자는 고정장치로 설치된 비운송차량의 면세신고를 처리할 경우에는 《차량취득세 납세 신고표》 및 《차량취득세 면(감)세 신고표》작성하여, 아래의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 신분증명  (2) 차량가격증명서  (3) 차량합격증명서  (4) 12.7\*8.9cm의 고정장치로 설치된 비운송차량의 내/외관 컬러사진  (5)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자료  주관세무기관은 면세 도감에 의거하여 차량 고정장치에 대한 확인조사 후, 면세수속을 처리한다.  5. “조건에 부합되는 고정자산의 가속감가상각 또는 단축감가상각 기한의 소득세 우대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한 심사” 의 폐지 후 유관 관리문제에 관하여  납세자가《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을 완전히 갖춘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 [2014]75호),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세수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제64호)에서 규정한 주요 업종별 가속감가상각의 정책을 누릴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 내 주관세무기관에《기업소득세 우대혜택사항 비안표》를 제출하고 동시에 분기별 예납시기마다 그 해당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납세자가 기타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정책을 누릴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기업소득세 우대혜택사항 비안표》를 제출해야 하며, 세법이 회계정산과 일치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예납시기마다 그 해당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세법이 회계정산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해당 우대혜택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 납세자는 이하의 자료를 구비하여 비치해야 한다.  (1) 고정자산의 성능, 예상사용기한이 규정된 감가상각 계산의 최저기한보다 짧은 이유, 증명자료 및 유관 상황설명  (2)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방법 및 감가상각액에 대한 설명  (3)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인정증서 사본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생산설비가 본 우대혜택에 적용될 경우 제공)  (4) 단축감가상각 또는 감모상각연한의 상황설명(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단축감가상각 또는 감모상각시 제공)  (5) 분기별 예납 신고표 및 1-2《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공제) 명세표》 추가 작성 (재세[2014]75호 문건에 규정된 정책에 적용되는 경우)  6.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항목에 종사하는 기업이 누리는 소득세 우대혜택의 비안심사" 폐지 후의 유관 관리문제에 관하여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항목에 종사하는 기업이 소득세 우대혜택을 누리는 경우, 납세자는 연말정산 내 주관세무기관에《기업소득세 우대혜택사항 기록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분기별 예납시기마다 그 해당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 납세자는 이하의 자료를 구비하여 비치해야 한다.  (1) 경영업무가《국민경제업종분류》중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설명  (2) 유효기간 내의 원양어업 기업자격증서 사본 (원양 어획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공)  (3) 현급 이상의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정부주관부서의 확인의견(진행하는 농산품의 재(再) 재배, 양식이 농산품의 재배, 양식 항목으로 간주되어 상응하는 세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제공)  (4) 농작물 신품종 재배에 종사하는 인정증서 사본 (농작물 신품중 재배에 종사하는 경우 제공)  본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수출 환급(면제) 비안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58741/part/1758769.doc>  2. 그룹회사의 자회사 비안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58741/part/1758770.xls>  3. 국경 소액무역방식의 외국기업 및 외국자연인 수출물품 세관신고 대리 비안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58741/part/1758771.xls>  국가세무총국  2015년8월3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部分税务行政审批事项取消后有关管理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56号  　　为加强后续管理，现就部分税务行政审批事项取消后有关管理问题公告如下：  　　一、关于取消“对办理税务登记（外出经营报验）的核准”后的有关管理问题  　　纳税人提交资料齐全、符合法定形式的，税务机关即时办理。纳税人提交资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税务机关制作《税务事项通知书》，一次性告知纳税人需要补正的内容。税务机关应当切实履行对纳税人的告知义务，及时提供咨询服务，强化内部督查和社会监督，提高登记办理效率。按照纳税人不重复填报登记文书内容和不重复提交登记材料的原则，加强部门之间信息、数据共享工作。  　　二、关于取消“偏远地区简并征期认定”后的有关管理问题  　　加强对实行偏远地区简并征期申报的纳税人日常管理及监控，实行税源跟踪管理，及时掌握纳税人经营变化情况。强化计算机管税，采取“人机结合”的方式，提高征期申报率和入库率，防止漏征漏管。简化办税程序，建立纳税服务新机制，降低纳税人办税成本，提高工作效率。  　　三、关于取消“出口退（免）税资格认定”“出口退（免）税资格认定变更”“出口退（免）税资格认定注销”“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退税资格的认定”“集团公司具有免抵退税资格成员企业认定”“以边境小额贸易方式代理外国企业、外国自然人出口货物备案登记及备案核销的核准”后的有关管理问题  　　（一）出口企业或其他单位应于首次申报出口退（免）税时，向主管国税机关提供以下资料，办理出口退（免）税备案手续，申报退（免）税。  　　1.内容填写真实、完整的《出口退（免）税备案表》（附件1），其中“退税开户银行账号”须从税务登记的银行账号中选择一个填报。  　　2.加盖备案登记专用章的《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表》或《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3.《中华人民共和国海关报关单位注册登记证书》。  　　4.未办理备案登记发生委托出口业务的生产企业提供委托代理出口协议，不需提供第2目、第3目资料。  　　5.主管国税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二）对出口企业或其他单位提供的出口退（免）税备案资料齐全，《出口退（免）税备案表》填写内容符合要求，签字、印章完整的，主管国税机关应当场予以备案。对不符合上述要求的，主管国税机关应一次性告知出口企业或其他单位，待其补正后备案。  　　（三）《出口退（免）税备案表》中的内容发生变更的，出口企业或其他单位须自变更之日起30日内，向主管国税机关提供相关资料，办理备案内容的变更。出口企业或其他单位需要变更“退（免）税方法”的，主管国税机关应按规定结清退（免）税款后办理变更。  　　（四）出口企业或其他单位撤回出口退（免）税备案的，主管国税机关应按规定结清退（免）税款后办理。  　　出口企业或其他单位申请注销税务登记的，应先向主管国税机关申请撤回出口退（免）税备案。  　　（五）已办理过出口退（免）税资格认定的出口企业或其他单位，无需再办理出口退（免）税备案。  　　（六）集团公司需要按收购视同自产货物申报免抵退税的，集团公司总部需提供以下资料，向主管国税机关备案：  　　1.《集团公司成员企业备案表》（附件2）及电子申报数据；  　　2.集团公司总部及其控股的生产企业的营业执照副本复印件；  　　3.集团公司总部及其控股的生产企业的《出口退（免）税备案表》（或《出口退（免）税资格认定表》）复印件；  　　4.集团公司总部及其控股生产企业的章程复印件；  　　5.主管国税机关要求报送的其他资料。  　　对集团公司总部提供上述备案资料齐全、《集团公司成员企业备案表》填写内容符合要求的，主管国税机关应当场予以备案。对不符合上述要求的，主管国税机关应一次性告知企业，待其补正后备案。  　　（七）按收购视同自产货物申报免抵退税的集团公司备案后，主管国税机关按照集团公司总部和成员企业所在地情况，传递《集团公司成员企业备案表》。  　　1.在同一地市的，集团公司总部所在地主管国税机关应将《集团公司成员企业备案表》传递至地市国家税务局报备，并同时抄送集团公司总部、成员企业所在地国家税务局；  　　2.在同一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下同）但不在同一地市的，集团公司总部所在地主管国税机关，应将《集团公司成员企业备案表》逐级传递至省国家税务局报备，省国家税务局应清分至集团公司总部、成员企业所在地国家税务局；  　　3.不在同一省的，集团公司总部所在地主管国税机关，应将《集团公司成员企业备案表》逐级传递至国家税务总局，由国家税务总局逐级清分至集团公司总部、成员企业所在地国家税务局。  　　（八）以边境小额贸易方式代理外国企业、外国自然人出口货物，出口企业应当在货物报关出口之日（以出口货物报关单上的出口日期为准）次月起至次年4月30日前的各增值税纳税申报期内，提供下列资料向主管国税机关办理代理报关备案。  　　1.企业相关人员签字、盖有单位公章且填写内容齐全的纸质《以边境小额贸易方式代理外国企业、外国自然人报关出口货物备案表》（附件3）及电子数据；  　　2.代理出口协议原件及复印件，代理出口协议以外文拟定的，需同时提供中文翻译版本；  　　3.委托方经办人护照或外国边民的边民证原件和复印件。  　　出口企业以边境小额贸易方式代理外国企业、外国自然人出口的货物，按上述规定已备案的，不属于增值税应税范围，其仅就代理费收入进行增值税申报。  　　主管国税机关应定期对出口企业以边境小额贸易方式代理外国企业、外国自然人出口货物的备案情况进行核查，发现出口企业未按照本条规定办理代理报关备案的，按有关规定处理。  　　四、关于取消“设有固定装置的非运输车辆免征车辆购置税的审核”后的有关管理问题  　　纳税人在办理设有固定装置的非运输车辆免税申报时，应当如实填写《车辆购置税纳税申报表》和《车辆购置税免（减）税申报表》，同时提供以下资料：  　　（一）纳税人身份证明；  　　（二）车辆价格证明；  　　（三）车辆合格证明；  　　（四）设有固定装置的非运输车辆内、外观彩色5寸照片；  　　（五）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主管税务机关应当依据免税图册对车辆固定装置进行核实无误后，办理免税手续。  　　五、关于取消“企业享受符合条件的固定资产加速折旧或缩短折旧年限所得税优惠的核准”后的有关管理问题  　　纳税人享受《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完善固定资产加速折旧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14〕75号）、《关于固定资产加速折旧税收政策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64号）规定的重点行业加速折旧政策，应当在汇算清缴期内，向主管税务机关提供《企业所得税优惠事项备案表》，同时可以在季度预缴环节享受该项优惠政策。纳税人享受其他固定资产加速折旧政策，应当在汇算清缴时提供《企业所得税优惠事项备案表》，对于税法与会计核算一致的，可以在季度预缴环节享受该项优惠政策；对于税法与会计核算不一致的，在汇算清缴时享受该项优惠政策。  　　另外，纳税人应当将以下资料留存备查：  　　（一）固定资产的功能、预计使用年限短于规定计算折旧的最低年限的理由、证明资料及有关情况的说明；  　　（二）固定资产加速折旧方法和折旧额的说明；  　　（三）集成电路生产企业认定证书复印件（集成电路生产企业的生产设备适用本项优惠时提供）；  　　（四）缩短折旧或摊销年限情况说明（外购软件缩短折旧或摊销年限时提供）；  　　（五）填报季度预缴申报表之附1-2《固定资产加速折旧（扣除）明细表》（适用于享受财税〔2014〕75号文件规定政策）。  　　六、关于取消“企业从事农林牧渔业项目所得享受所得税优惠的备案核准”后的有关管理问题  　　企业从事农林牧渔业项目所得享受所得税优惠，纳税人应当在汇算清缴期内，向主管税务机关提供《企业所得税优惠事项备案表》，同时可以在季度预缴环节享受该项优惠政策。  　　另外，纳税人应当将以下资料留存备查：  　　（一）经营业务属于《国民经济行业分类》中的农、林、牧、渔业具体项目的说明；  　　（二）有效期内的远洋渔业企业资格证书复印件（从事远洋捕捞业务的提供）；  　　（三）县级以上农、林、牧、渔业政府主管部门的确认意见（进行农产品的再种植、养殖是否可以视为农产品的种植、养殖项目享受相应的税收优惠难以确定时提供）；  　　（四）从事农作物新品种选育的认定证书复印件（从事农作物新品种选育的提供）。  　　本公告自发布之日起施行。  　　特此公告。  　　附件：  　　1、出口退（免）税备案表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58741/part/1758769.doc>  　　2、集团公司成员企业备案表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58741/part/1758770.xls>  　　3、以边境小额贸易方式代理外国企业、外国自然人报关出口货物备案表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58741/part/1758771.xls>  国家税务总局  2015年8月3日 |